

朝鮮後期 書院의 經濟基盤

尹 熙 勉*

- | | |
|-------------|--------|
| 1. 序 言 | 4. 書院村 |
| 2. 書院田과 奴婢 | 5. 結 語 |
| 3. 額外院生과 院保 | |

1. 序 言

朝鮮時代의 書院¹⁾에 대해서는 많은 研究가 있어 왔다. 그러나 書院의 經濟問題에 관한 것은 별반 論議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겨우 閔丙河氏의 「朝鮮書院의 經濟構造」²⁾가 유일한 듯 싶다. 이처럼 研究가 不振한 理由는 資料의 수집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또 구체적인 記錄이 不足한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朝鮮時代에 설립된 수 많은 書院들의 경제기반에 대하여 과연 어떻게 接近해야 할까 하는 方法上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制約과 難點 때문에 書院의 경제문제를 그대로 도의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우선 조선시대의 書院의 經濟基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조선시대의 書院의 經濟基盤으로 보통 書院田과 奴婢를 들고 있다. 즉

* 全南大學校 師範大學 國史教育科

1) 書院과 祠字는 본래 그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朝鮮後期에 書院의 기능이 祀賢爲主로 변해 뚜렷히 구분되지 않는 面도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書院·祠字를 總의상 書院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한다. 書院·祀字의 구체적인 區別에 대해서는 鄭萬祚, 「17~18世紀의 書院·祀字에 대한 試論」(『韓國史論』 2, 1975) pp. 215~222 參照.

2) 閔丙河, 「朝鮮書院의 經濟構造」(『大東文化研究』 5, 1968).

免稅와 免役의 特權을 지님으로 해서 書院들은 各地에 巨大한 농장과 노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實例로 白雲洞書院은 設立初期에 이미 30餘結의 土地와 18口 以上の 노비를, 陶山書院은 6結 以上の 土地와 11口의 노비를 所有하고 있었다 한다.³⁾ 그러나 이러한 두 書院의 例를 가지고 약 1,000여개나 되는 朝鮮時代 書院의 經濟基盤을 一般化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 두 書院은 初期에 생긴, 또 全國的으로 有名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그만큼 國家나 地方官으로부터 보호와 支援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土地와 奴婢를 所有할 수 있었다. 그러나 朝鮮後期の 書院은 各地에서 濫設되고, 이에 따라 갖가지 社會의 弊端을 야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점차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後期の 書院들이 初期의 書院들처럼 國家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 막대한 土地와 奴婢를 所有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에서 本稿에서는 土地와 奴婢가 朝鮮後期 書院의 중요한 경제기반이었다는 理解에 대하여 일단의 疑問을 표시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書院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 國家와 地方官의 도움에 依存하기 어렵게 되자 書院 나름대로 經濟問題를 마련하기 위해 나타난 額外院生⁴⁾과 院保, 그리고 書院村이 보다 重要的 經濟基盤이 되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단편적인 資料에 依存하였기 때문에 本稿는 하나의 假說에 지나지 않음을 자인한다. 많은 叱正을 바라고자 한다.

2. 書院田과 奴婢

書院의 주된 經濟基盤이 되는 것은 土地와 奴婢였다. 예컨대, 正祖 17

3) 上同 pp. 6~11, pp. 18~21 參照.

4) 朝鮮後期 院生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論文들이 參考된다.

金東洙, 「朝鮮後期の 院生에 대한 一考」(『全南大教育論叢』2, 1978).

宋贊植, 「朝鮮後期 校院生考」(『國民大論文集, 人文科學篇』11, 1976).

年 10 月의 禮曹正郎 李福休의 啓에

書院之設 乃爲獎學之地 而近來全無…設置書院 意在尙賢 則固難一朝撤去 而今若於各邑鄉校之側 別設一院 集院而享之 使校僕守之 而院之有田畝者 歸于本校 有奴婢者 屬之本官 其院生之募入者 各歸國役 則列邑軍保 庶無難充之患矣(日省錄 卷 440, 正祖 17 年 10 月 1 日條)

라 하여 書院을 철폐하는 하나의 단계조치로 鄉校 옆에 合同書院을 세워 並享시키자고 하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書院의 田畝은 鄉校에, 奴婢는 本官에 歸屬시키자고 建議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서 보듯이 書院의 경제 기반의 되는 것이 土地와 奴婢였다는 것을 우선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면 書院田의 규모는 어떠하였을까. 7 年 6 月 大司成 金萬重의 上疏에

書院之設 非不美 而其數過多 一邑至有七八處 一道至有八九十處 書院之盛 無如嶺南 廣占土田 多聚閑丁(肅宗實錄 卷11, 7 年 6 月 癸未條)

이라 하였듯이 書院이 土地를 廣占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白雲洞書院의 경우 設立初期에 30 結 以上の 土地를 所有한 것으로 되어 있고, 陶山書院의 경우는 寺社位田, 願入田, 免役田, 買得田, 屬公田의 移給 등의 方法을 통하여 이미 草創期에 6 結 以上の 田畝를 所有하고 있었다.⁵⁾ 이 書院들은 朝鮮에 있어서 書院이 成立하던 初期의 것들로 國家나 官의 保護 下에서 발전한 것들이었다. 예컨대 陶山書院의 田畝 중 官의 조치로 생각되는 寺社位田, 屬公田의 移給은 모두 3 結 60 負나 된다.⁶⁾ 그러나 朝鮮後期에 書院이 濫設되어 한 邑에 7, 8 個, 한 道에 8, 90 個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⁷⁾ 또 書院의 弊端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였다.⁸⁾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白雲洞書院, 陶山書院처럼 이때의 書院들이 國家나

5) 註 3) 과 同

6) 上同 p. 11 參照.

7) 肅宗實錄 卷11, 7 年 6 月 癸未條

8) 金東洙, 前揭論文, pp. 12~14 에 書院弊端에 대한 지적들이 정리되어 있다.

官의 支援을 전폭으로 받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國家에서 書院에 土地를 지급하는 例가 있었다.

- A) 行司直徐必遠上疏 請以東郊甲士場 移給禁軍之有馬者 蓋甲士場 即祖宗朝設置五衛時 甲士牧馬處也 壬辰以後 軍額大損 五衛之制遂廢闕 故相臣李恆福請以本場許給道峰書院 以爲養士之資…令戶曹劃給他田於書院 本場則還屬本曹宜當 上從之 (顯宗改修實錄 卷6, 2年 10月 丙申條)
- B) 因平安監司閔維重啓請 令龍岡咸從兩處屯田 劃給平壤書院 以廩儒生(上同 卷22, 11年 2月 戊辰條)
- C) 英祖二十一年…萬東廟免稅田 每位各十結 合二十結劃給(度支志 卷5 版藉司 館學校院位田)
- D) 道峰書院位田 英祖癸丑(英祖 9年) 因戶曹判書金在魯筵奏 例給三結外 加給七結(萬機要覽 財用篇 2 免稅 學田)

以上の 例에서 보듯이 書院에 土地를 劃給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大賢書院의 경우라는 점이 注目된다. 즉 甲士場의 劃給(A), 七結을 加給받은(B) 道峰書院은 趙光祖를 奉祀하는 書院이며, 平壤書院은 箕子를(B), 그리고 萬東廟는(C) 明의 神宗, 毅宗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다. 곧 이는 特例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書院에 土地를 支給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書院의 土地支給의 例에서 알 수 있는 것은 A) B)의 경우는 土地의 新給으로 생각되지만, C)D)의 경우는 免稅의 特權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⁹⁾ 이처럼 初期書院의 例와는 달리 國家에서는 書院에 土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제 賜額을 받은 書院인데도 免稅의 特權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었다. 즉

果川四忠書院……而昔在英廟朝乙巳 因特敎糊建賜額者也…賜額書院之自備位士三結免稅 係是法典所在 況此院既異私設 而基址已屬本院 則尙此收稅(承政院日記 2252冊, 純祖 30年 4月 20日條)

이러한 것에서 果川의 四忠書院은 賜額書院임에도 不拘하고 免稅의 特權

9) 史料 D)에서 '例給三結'이란 것은 續大典의 '賜額書院 免稅田 三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大賢書院이나 賜額書院이 아닌 경우는 土地所有에 있어서 상당히 劣勢에 놓여있었다고 생각 한다.

初期의 書院이 폐쇄된 官學을 대신하는 教育機關으로 등장하였을 때 國家나 官의 보호와 도움에 크게 의지하였겠지만, 後期에 내려올수록 書院의 폐단에 대한 잦은 論議에 따라 규제가 심해졌던 것이다. 書院의 濫設, 書院이 避役處가 된다는 것, 書院機能의 變質 등등의 잦은 지적과 함께¹⁰⁾ 英祖 17年에는 書院의 撤廢措置도 있었다. 그리고 書院設立에 있어 事前에 許可를 받게도 하였다.¹¹⁾ 결국 正祖 10年에

外方祠院冒禁砌設 觀察使拿處 守令三等奪告身 首唱儒生遠配 賜額書院不稟朝家 自配享者 道臣重推 地方官罷職 首唱儒生三年停學 (增補文獻備考 卷210 學校考 9 祠院總論)

라 하여 書院의 濫設에 대해서 地方官을 처벌하고 主動한 儒生은 귀양을 보내며, 또 賜額書院이 國家에 보고도 없이 配享者를 정하는 경우도 地方官을 처벌하고 主動儒生은 3年間 停學시킨다는 규정이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속에서 書院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官의 支援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었다. 예컨대 「大典通編」卷 3 禮典 雜令條에

書院請位田 而本道私自與受 隨現重繩

이라 하여 書院에 土地를 사사로이 지급하면 엄하게 治罪한다는 규정은 書院田의 실패를 짐작케 해준다고 하겠다.

朝鮮後期에 있어서 書院의 設立은 地方土材들의 自體的인 활동에 따라 가능한 것이었다. 또 경계기반으로 土地를 마련하는 것도 ‘自備’가 原則이 되었다. 곧 書院設立에 있어서

E) 境內士子 各捐財力 建祠(列邑院宇事蹟 忠淸道 洪州 惠學書院 講堂懸板)

10) 註 8)과 同.

11) ‘上疏 請建院’ ‘稟于朝廷而砌建者’ (英祖實錄 卷7 元年 8月 辛巳條).

F) 工治所費 用皆士林之所私出所私具也 不以一物煩人 一事于府縣 故力小而功遲
(上同 忠清道 懷德 龍湖鄉賢祠 院記)

G) 鳩聚財力(上同 公州 滄江書院 事實)

이라 하여 士子各捐財力(E), 士林之所私出所私具也(F), 鳩聚財力(G) 등
등의 표현은 의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當時 書院建立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士林들이 自體的으로 경비를 마련하여 建立한 書
院의 土地¹²⁾는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朝鮮後期の 書院은, 各己 土地所有量에는 차이가 있었겠지만,
대체로 어느 정도의 土地를 所有하고 있었을까. 「續大典」卷 2 戶典 學田
條에

書院田 本院自備 雖未滿三結 勿以民結充給
賜額書院三結 (未賜額 則無免稅位)

이라 하여 書院田은 3結을 自備하도록 하고 3結이 안되거나도 民結로 充
給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賜額書院에 한하여 3結을 免稅한
다고 하였다. 이 續大典의 규정은 景宗 元年 5月 戶曹判書 閔鎮遠의 啓에

因戶曹判書閔鎮遠啓 免稅田結 賜額書院 各給三結 未幾罷之(增補文獻備考 卷210
學校考 9 祠院總論)

라 한 것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
하였다(未幾罷之). 그 뒤 英祖 元년에

上御畫講 知事閔鎮遠陳...宜依先朝定式 賜額書院田 限三結免稅 而必以本院自備位
田 許令免稅 勿許民結中免稅 從之(英祖實錄 卷3, 元年 2月 戊子條)

12) 正祖 22年 3月의 敎에

敎曰 校院位田 頃於該邑閑地買取 然後免稅 自是法典(正祖實錄 卷48, 22年
3月 乙亥條).

이라 하여 校院位田은 該當地域의 閑地를 買得한 뒤에 免稅를 받는다는 것은
書院에서 土地를 마련하는 것이 國家나 官의 支給이 아닌 自備, 곧 書院自體
에 의한 것임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라 한 閔鎭遠의 陳言에 따라 法制化되었던 것이다. 「續大典」의 규정에서 注目되는 것은 三結을 自備하고 不足하더라도 民結로 채우지 못한다고 한 점이다. 즉 書院田은 賜額書院의 경우 3結에 한하여 免稅의 特權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에 不足하면 할수록 國家의 立場에서 볼 때에는 免稅의 特權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買得, 願入, 寄進 등의 正當한 方法을 취하지 않고 租稅를 納付해야 하는 民田으로 3結을 채워, 또는 3結 모두 民田으로 채워 免稅받는 것은 國家의 財政을 침탈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러한 「續大典」의 규정은 書院田의 免稅擴大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3結을 免稅의 上限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3結 정도의 土地를 가지면 書院運營에 큰 지장이 없다는 생각에서, 또한 書院田 免稅의 擴大를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當時 書院의 土地所有가 이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물론 書院마다 各已 差異가 있어 3結 以上の 土地를 가진 書院도 상당수 있었겠지만 이에도 미치지 못한 書院이 많았던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續大典」의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閔鎭遠의 陳言에서) 볼 수 있듯이 賜額書院 가운데에도 3結 免稅의 特權을 다 받지 못해 民結로 채워야 할 정도로 土地所有가 빈약한 곳도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未賜額書院은 土地所有에 있어서 대부분 이보다 더 低劣한 상태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朝鮮時代 書院의 全體 土地所有는 어느 정도였으며, 總土地結數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었을까. 賜額書院들도 제각기 차이가 있으며, 또 未賜額書院이라 해도 賜額書院들 보다 더 많은 土地를 가진 것도 있다는 점 등에서 막연한 推測에 不過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다. 그러나 앞서 賜額書院이면서도 3結 免稅를 채우지 못할 정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략 3結이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조선시대 書院의 總數를 약 1,000 여개로 잠정 추산하면¹³⁾ 3,000 여결 미만이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¹⁴⁾ 18세기초 宮房田의 경우 4萬結에 달한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¹⁵⁾ 겨우 $\frac{1}{10}$ 도 안되는 량이라 하겠다. 더구나 賜額書院이 아닌 경우는 免稅의 特權이 없었다. 「續大典」에

未賜額 則無免稅位(續大典 卷2 戶典 學田條)

라든가, 또는

書院位田 賜額外 依舊應稅(英祖實錄 卷21, 5年 正月 甲寅條)

라 한 것에서 未賜額書院은 出稅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들로 보아 朝鮮後期에 있어서 書院田이 종래 이해하는 것처럼 거대한 農莊을 이루고 免稅의 特權을 누리며 累加的으로 확대하고 있었다고¹⁶⁾는 생각되지 않는다.

書院의 경제적 기반으로 土地와 함께 奴婢가 있었음은 앞서 正祖 17年 10月の 禮曹正郎 李福休의 上疏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初期의 白雲洞書院은 18口의 노비를, 陶山書院은 11口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¹⁷⁾ 이것은 書院田과 같이 대부분 官의 支援에 의해 소유하게

13) 조선의 書院總數는 확실하지 않으며 또 各 記錄마다 차이가 있다. 대개 700 여개에서 1,300 여개로 추측하는 등 일정하지 않다. 여기서는 양자를 절충하여 대략 1,000 여개로 잠정 계산하였다.

14) 조선시대 書院의 土地量에 대해서 閔丙河氏는 賜額書院의 免稅田을 6萬結 정도로 보고 있다(閔丙河, 前揭論文, pp. 86~87) 또 李泰鎮氏는 書院免稅田의 규모를 20~30 結로 보고 있다(李泰鎮, 「士林과 書院」 『한국사』 12, 1978, pp. 161~162).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앞서 白雲洞書院, 陶山書院의 例를 가지고 한 것이었다. 따라서 서술한바와 같이 대략 3 結정도를 書院의 標準值로 잡고 3,000 여결로 보고자 한다. 最近에 金世潤氏도 대략 3 結로 보고 서원수를 700 여개 정도로 계산하여 2,200 여결을 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金世潤, 「大院君의 書院撤廢에 관한 一考察」(西江大 碩士學位論文, 1980) 註 18) pp. 11~13 參照).

15) 安秉珪, 『朝鮮近代經濟史研究』(日本評論社, 1975) p. 48 參照.

16) 閔丙河, 前揭論文, pp. 18~21.

17) 上同 p. 13.

된 것이었다. 그러나 朝鮮後期の 書院의 濫設에 따른 書院田의 규제와 마찬가지로, 또 當時의 社會的인 變化에 따라 書院의 奴婢소유에 있어서도 전과는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院奴는 처음에는 그 額數가 정해지지 않은듯 하며, 書院마다 差異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孝宗 8年 6月 忠淸監司 徐必遠의 啓에

言書院私建有弊而院奴未有定額 請禁其私建 毀其濫雜 查其額數 上從其言 禁書院 鄉賢祠之私建 首唱儒定罪 賜額書院給奴婢七人 未賜額書院給五人 鄉賢祠給二人 使之看護 而並令汰其額外(增補文獻備考 卷210 學校考 9 祠院總論)

라 하여 書院의 奴婢가 定額이 없어 폐단이 생긴다고 지적하며 그 시정을 요청하자, 이에 賜額書院은 7人, 未賜額書院은 5人, 鄉賢祠는 2人으로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 各 書院에 정해진 奴婢數는 書院을 유지하는데 必要한 最少限의 숫자였다고 생각되고 있다.¹⁸⁾ 그러나 「增補文獻備考」에 院奴라고 되어있는 것은 記錄上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는 保奴, 즉 院保를 가리키는 것이었다.¹⁹⁾ 노비는 土地와 같은 財産이었다. 또 書院의 노비는 免稅의 特權을 지닌 書院田과는 달리 국가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所有에 있어서 何等의 制限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國家에서 따로 所有의 制限을 둘 성질의 것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書院의 財政如何에 따라 자기 數에 많은 差異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서 書院田에서 볼 수 있듯이 書院奴婢에 있어서도 自備가 原則인듯 싶다. 즉 書院의 濫設로 규제대상이 되어 國家나 官의 支援과 保護에 依存키 어렵기 때문에 書院奴婢도 士林들이 書院을 建立하면서 自體的인 方法—에컨대 買得, 寄進—으로 마련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따라서 書院奴婢의 數는 대부분의 서원의 경우 書院田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커다란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이 때문에 全羅道 谷城의 申崇謙을 奉祀하는 德陽祠의 경우처럼

18) 崔完基, 「朝鮮書院 一考」(『歷史教育』18, 1975) p.155.

19) 이에 대해서는 3章에서 詳及하였다.

儒生二十名 保奴二十名 庫子一名 驢奴一名 近行使一名, 點火奴一名, 炬火奴一名 典祀廳直一名 東山直一名(別庫子例兼) 西山直一名(元庫子例兼) 後山直一名(戊午新定) 以上 或院奴或底民爲之(德陽祠誌 1 元庫事例)

이라 되어 있듯이 書院의 使喚, 守直을 奴婢와 함께 書院附近의 良民들이 擔當하는 事例도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書院의 노비가 買得, 生産, 寄進 등의 方法이 아닌 避役者의 投托으로 增加되는 例가 있었다. 즉 正祖 21年 7月 掌令 朴道翔의 上疏에

二曰 書院之弊…且一書院奴婢之數 或至五六十 或至三四十 奸民逃役 間多投屬 此亦量宜定數 爲矯球之一端(正祖實錄 卷47, 21年 7月 辛巳條)

이라 하여 書院의 폐단으로 書院奴婢를 들고 있다. 즉 書院奴婢가 30~50 명정도가 되며 이는 奸民이 避役을 목적으로 書院에 投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자주 지적되는 것이었으니 正祖 8年 4月의 嶺南 暗行御史 鄭大容의 復命書啓에서도

一. 軍政黃白 無邑無之 民少額多 已成通患 苟究其弊 自有厥由 白徒閑遊則 鄉校 奴書院奴 初無定數 既多投托…今於校院奴 酌量其享祀時使喚及守直修掃等舉行 而 限以幾名(正祖實錄 卷23, 11年 5月 壬寅條)

이라 하여 鄉校, 書院의 노비에 定額이 없기 때문에 軍役을 피하려는 閑遊者가 投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書院維持에 必要한 使喚, 守直을 헤아려 數를 限定하자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자체적인 마련이든 投托이든 書院은 奴婢를 대규모로 所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避役을 爲해 書院에 投托한 이들이 과연 신분적으로 奴婢化된 것일까 하는 점이다. 즉 書院을 設立하면서 마련한 奴婢 以外에 不正한 方法으로 서원에 投屬된 이들이 과연 財産으로서의 奴婢로 存在하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朝鮮後期の 身分制 變動에 따라 奴婢身分에도 커다란 變化가 나타나게 되었다. 노비의 身分的 地位는 전보다 上昇하고 있었고 또 노비에 대한

규제도 緩和되고 있었다.²⁰⁾ 또한 書院奴婢의 경우 書院을 管理하고 유지하는데 직접 使役되는 使喚, 守直 以外에는 獨立戶를 이루고 外居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英祖 22 年에 發給된 것으로 보여지는 陶山書院完文²¹⁾에

陶山書院完文 右完文爲本院奴婢 居在各邑者 軍布雜役 依前例勿侵事 完文成給事 丙寅三月 日

安東 禮安 榮川 奉化 豐基 順興 醴泉 尙州 英陽 眞寶 青松 寧海 盈德 清河 興海 慶州 義興 義城

이라 되어있어 陶山書院의 노비가 慶尙道內 18 個 郡縣에 散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外居하는 이들 奴婢들은 全般的인 身分의 地位의 상승 추세와 함께 人身的으로 豫속되어 身役을 바치는 경우는 드물고 身責을 負擔하는 추세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곧 書院奴婢의 隸屬程度가 상당히 弱化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保奴三十名 春秋等所納米 每名三斗 鷄二首 眞荏六升 眞麥六升(筆巖書院誌 卷8)

奴三十名 春秋等所納米 每名三斗 鷄二首 眞荏六升 眞麥六升(上同 卷1)

즉 長城의 筆巖書院의 경우 保奴(즉 院保)와 外居하는 書院奴의 負擔이 같다는 것은 奴婢의 현실적 地位를 짐작하게 해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도망도 속출하였다.²²⁾

當時 이러한 奴婢身分의 變化, 書院奴婢의 상태에 비추어 볼때 避役을 目的으로 書院에 노비로 投托하였다는 것을 순수한 노비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院保를 포함하여 지적한 것이 아닐까 한다. 또한 실령 이들이 노비로 변했다 하더라도 避役의 代價로 서원에 일정한 經濟的 負擔을

20) 奴婢從母從良法, 贖良規定의 出現, 奴婢身責減少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은 金錫亨, 『朝鮮封建時代 農民의 階級構成』, 1960, pp.112~126 參照.

21) 李樹健編, 『慶北地方古文書集成』,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1) p.803.

22) 筆巖書院의 경우 逃奴秩에 26名, 逃婢秩에 23名의 名單이 보이고 있다(筆巖書院誌 卷 11).

朝鮮後期 奴婢의 도망에 대한 것은 鄭奭鍾, 「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崩壞」 (『19世紀의 韓國社會』, 1971) pp.317~327 參照.

지는 存在에 不過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²³⁾

이와 같이 朝鮮後期の 書院奴婢는 書院田과 마찬가지로 地方士林들이 書院을 建立하면서 買得, 寄進 등의 自體的인 方法으로 마련하였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큰 규모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奴婢를 所有함에 있어서도 前과는 달리 奴婢身分의 上昇, 外居化 등의 요인으로 人身의인 예측이 弱해지게 되었다. 더구나 이러한 노비도 도망이 심해져²⁴⁾ 減少되는 추세에 놓였던 것이다.

3. 額外院生과 院保

書院의 주요한 경제기반이 되는 土地와 奴婢는, 後期에 이르러 書院이 國家의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官의 支援과 保護에 依存하지 않고 自體的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다지 큰 규모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노비의 경우는 身分制의 變動에 따라 身分의인 예측도가 낮아져 經濟的 負擔爲主로 변해갔다. 또 도망이 심해지고도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祭祀에 필요한 祭需도 書院의 濫設을 막기 위해 賜額書院에만 지급하도록 하였다.²⁵⁾ 따라서 書院들은 書院의 維持와 運營을 위하여 土地와 奴婢 以外的 다른 경제기반을 모색하게 되었다. 곧 書院의 권위를 배경으로 한

23) 과연 書院에 投托한 이러한 部類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奴婢의 身分으로 轉落한 者들도 있었겠고, 또 院保로, 또는 書院의 權威에 假託하여 國家의 諸般負擔을 謀免하려는 者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이들을 一律으로 노비로만 把握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叙述한 바와같이 朝鮮後期奴婢身分의 變化를 고려에 넣는다면 노비가 점하는 比重은 상당히 낮다고 여겨진다.

書院의 奴婢에 대해서는 個別的인 研究가 必要하겠지만 本稿에서는 경제기반으로서의 노비의 比重은 通說과는 달리 그다지 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24) 筆巖書院의 경우 재정의 不足을 充當하기 위해 노비를 매각하고 있음이 散見된다. (筆巖書院誌 卷10 奴婢譜) 이러한 記錄들은 高宗年間의 것으로 以前의 실태와는 差異가 있었겠지만 奴婢가 가지는 書院經濟의 比重, 또 財政의 전반적인 不足現象을 反映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25) 孝宗實錄 卷18, 8年 6月 壬辰條, 牧民心書 卷7 禮典 祭祀條.

院生募入과 院保였다.

肅宗 25年 閏七月 領議政 柳運尙의 啓에

書院異於鄉校 鄉校則有額內外校生 額外則庶孽良民皆入屬 與館學下齋同 而書院則士子之尊崇者 皆同入於青衿錄 而本無額內外之分矣 今聞書院亦有額外作各入屬之處云(備邊司謄錄 50冊, 肅宗 25年 閏 7月 17日條)

이라 하여 書院의 院生은 본래 青衿錄²⁶⁾에 들어있어 額內, 額外의 구분이 없었는데 鄉校처럼 額外院生을 募入하여 入居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書院에서 종래에 볼 수 없던 額外院生을 募入한 것은 財政의 打開策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 즉,

左議政閔鼎重…又所啓 近來士習怠慢 諸處書院 慕效鄉校 又皆稱以西齋 募入院生之類 或代行焚香 或稱禮納 貢徵米布云 事極無據 令該曹分付諸道 其有此弊者 一切革罷 何如(承政院日記 297冊, 肅宗 9年 正月 10日條)

이라 하여 書院이 鄉校를 본받아 西齋生이라는 이름으로 院生을 募入하고 禮納이라는 名目으로 米布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또한 景宗 4年 4月의 全羅右道暗行御史 李眞淳의 書啓에

近來書院之弊 諸臣相繼陳達 而臣下去南土 益知此弊之無窮…而及其既建之後募得閑丁 謂之書院生及書院募入 而儒案書名 或歲歲納米 或納田畝 而一生除役者 其數無算 各邑之閑丁難得 又添一場 以錦山一小邑言之 有五處書院而閑丁投屬 殆一過一境 其餘他邑 亦可推知(書院謄錄 卷5 甲辰 4月 28日條)

이라 하여 書院을 建立한 뒤 院生과 額外院生을 募入, 儒案에 등재하고 이들에게 해마다 米를 바치게 하고 또는 田畝를 바치게 하였다는 것 등은 院生이 書院의 재정과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하겠다.

募入院生의 增加는 良役擔當者의 減少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國家에서는 이에 대해 자주 禁令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額外院生이 土地

26) 青衿錄이란 25—55歲 사이의 儒生의 名單을 적은 儒生錄이라 한다(安鼎福, 雜同散異 青衿錄).

와奴婢와는 달리 서원측으로 볼 때 손쉬운 재정해결책이 된다는 점에서 쉽게革去되기는 어려웠다. 결국 國家에서는 額數를 정해 어느 정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니, 肅宗 37年 12月 備邊司良役變通別單에서

各書院西齋生 依丁亥定奪 大賢書院三十人 賜額處二十人 未賜額處十五人 亦爲並錄於校案末端(肅宗實錄 卷50下, 37年 12月 庚辰條)

이라 하여 額外院生을 大賢書院에는 30名, 賜額書院은 20名, 未賜額書院은 15名으로 정하고, 校案의 끝에 並錄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定額規定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²⁷⁾ 額外院生이 書院에 入屬하는 경우는 募入과 投托의 두 가지 方法이 있었다. 즉 正祖 15年月, 承旨 朴錕이 驪州地方 簽丁의 폐단에 대해 말하던 때에

軍總耗縮之源 實由於兩陵守護軍及校院生之數外加設與願納 宜有釐正之道 (正祖實錄 卷32, 15年 3月 戊寅條)

라 하여 校院生의 額外는 加設과 願納이 있다고 하였다. 加設은 書院에서 자발적으로 募入한, 즉 ‘募取良丁 作爲院生’²⁸⁾한 募入院生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는 곧

廣招富民 勸屬院生 捧錢累千(英祖實錄 卷5, 元年 4月 壬辰條)

이라 하였듯이 서원재정의 充當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願納이란 軍役을 피하기 위하여 納錢하고 院生으로 入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예컨대 「朝鮮民政資料」居官大要에

校生院生及校院募入之屬 皆有元定額數 而以其比良役甚便歇故 頑民之謀避軍役者 許令納賂募入 其數漸多 以收番錢 又或捧錢煩役 皆是齋任輩操縱染指之資也(居官大

27) 筆巖書院의 경우를 보면 ‘東齋儒生無定額 西齋儒生三十名’(筆巖書院誌 儒生條)이라 되어 있고, 院籍에 記載된 院生의 수는 肅宗 34년에 296名, 43년에 187名, 英祖 18년에 306名, 22년에 305名으로 대개 200~300명에 달하고 있다.

28) 英祖實錄 卷8, 元年 11月 丁未條.

要 學校條)

라 하여 ‘捧錢頗役’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加設이던 願納이던 院生으로 募入된 사람들은 納錢, 納米, 納田畝 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存在들이었다. 이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書院에 院生으로 入屬하여 免役을 하고, 또 身分上昇을 도모 하려는 存在들이었다.²⁹⁾ 결국 書院은 이들의 免役과 身分上昇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대신 書院의 운영에 필요한 財政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鄉校의 校生도 院生과 마찬가지로 額外校生이 있었고 이들도 鄉校에 入屬하기 위해서는 納錢해야 했다. 英祖 26年 12月 左議政 金若魯의 말에

此輩或陞鄉者 或有陞校者 一入兩處後不復以軍保侵責 故軍保失之弊 亦由於此矣 上曰 其所許入何也 尙魯曰 爲其禮錢數十兩 而許入矣 (承政院日記 1063冊, 英祖 29年 12月 14日條)

이라 한 것에서 陞鄉, 陞校하려면 禮錢 수십량을 내야한다고 하고 있다. 실제 강원도 杆城의 경우는 良人 李莫守의 말에

…以良人付校生 而捧七十兩 以校生陞鄉 而捧錢二百兩 (日省錄 正祖 11年 4月 4日條)

이라 하였듯이 校生이 되려면 70兩, 鄉案에 오르려면 200兩을 捧錢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書院은 鄉校보다 社會의으로 우대를 받고 있었다³⁰⁾는 점을 생각한다면 院生入屬이 校生으로의 入屬보다 더 高價였다고 믿어진다. 그리고 校生の 禮錢이 향교와 官家의 재정책이 되었던 것에 반하여³¹⁾

29) 院生의 실질적인 社會의 地位를 兩班의 下層, 平民의 上層에 속하는 中間階層으로 보는 見解가 있다. 金東洙, 前揭論文, p. 53 參照.

30) 鄉校書院 輕重有間 鄉居士子之名爲士族 稍有才識者 則藉各書院 稱以院儒視鄉校如店舍 待校生如奴隸 (孝宗實錄 卷18, 8年 6月 壬辰條).

31) 凡其物納 非但爲鄉校 咸昌校生則 以官家成造時 納米免講 永川校生 則本官賑教之時 納米免講 守令等 以校生物納 至爲官家補用之資者 (備邊司謄錄 41冊, 肅宗 13年 11月 3日條).

서원은 士林들의 自意的인 운영에 맡겨 있었다.³²⁾ 따라서 院生の 募入은, 곧 額外院生の 納錢은 朝鮮後期 書院의 경제기반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額外院生과 함께 書院의 경제기반이 되는 것으로 院保라는 것이 있다.
高宗 元年 4月 大王大妃의 傳敎에

各邑所在書院鄉賢祠生祠堂 及每院祠所屬田結總保額 消詳懸錄 一一登聞事(日省錄 高宗 元年 4月 22日條)

이라 하여 書院, 祠宇의 수와 所屬 田結, 院保의 수를 조사하도록 명령한 것에서, 書院의 保(院保)가 書院의 중요한 人的基盤, 經濟基盤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保라는 것은 奉足과 같은 것으로 軍役負擔과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世祖 五年의 保法成立 以後 軍役이 納布制로 바뀌어 가는 것과 함께 保는 더욱 경제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³³⁾ 그런데 朝鮮後期에 있어서는 軍保뿐만이 아니라 吏保, 軍官保, 使令保, 通引保 등 官屬에게도, 또한 匠人, 驛, 鄉廳 등에도 保가 있었다. 과연 이러한 各種의 保가 언제,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保를 私募軍이라 하는 것에서 訓練都監 東伍軍의 設置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分明하지 않다.³⁴⁾

書院의 保도 과연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폐단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孝宗 8年 6月, 忠淸監司 徐必遠의 馳啓에서

32) 校生院生 及校院募入之屬 皆有定額數 而以其比良役使歇故 頑民之謀避軍役者 許令納賂募入 其數漸多 以收番錢 又或捧錢頗役 皆是齷任操縱染指之資也 不由官家 而私自出牌 以啓任意黜陟之門(朝鮮民政資料 居官大要).

33)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前期篇』(陸軍本部, 1968) pp. 234~250 參照.

34) 仁祖 7年 7月 特進官 李曙의 말에

東伍之難充 其弊實在於各邑鄉所鄉校書院司馬所也 閑丁之投屬甚多 多者幾至於五六百 衙前輩亦多冒占矣(仁祖實錄 卷21, 7年 7月 丙午條)

라 하여 鄉所, 鄉校, 書院, 司馬所에 閑丁의 投屬이 심하고, 또 衙前輩도 많이 冒占하고 있어 東伍軍을 充當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 혹 各種의 保를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한다.

書院事體 亞於鄉校 而近緣朝無禁制 土爲定論…槩以言之 其弊有四…毋論良賤 募得閑民 稱以保奴 任意使喚 隨其所得 多少不齊 而募得之後 則執爲院物 如有奪定軍役之舉 則群起嗷嗷 必律所欲而後已 此二弊也…所謂保奴 毋論已賜額書院鄉賢祠 一切革罷 歸之本官 以屬軍兵(孝宗實錄 卷18, 8年 6月 壬辰條)

이라 하여 서원에서 良賤을 가리지 않고 閑民을 募入하여 保奴라 칭하며 使喚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모두 褫과하여 軍兵에 속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禮曹의 回啓는

書院鄉賢祠保奴 雖極濫觴 而但書院多在山谷中 不可無守直之人 賜額書院則保奴七名 未賜額書院則保奴五名定給 鄉賢祠則非但事體輕於書院 多在於邑內村間 只給保奴二名 皆令諸道 永爲恒式 其餘良丁之謀免軍役 及公私賤之謀免東伍 投屬書院鄉賢祠者 並皆查出定軍(上同)

이라 하여 保奴의 數를 賜額書院에 7名, 未賜額書院에 5名, 鄉賢祠에 2名씩 정하고, 그 以外的 保奴는 良人은 軍役に, 公私賤은 東伍軍에 定軍시키도록 하고 있다. 禮曹의 回啓에서 알 수 있듯이 保奴는 良人과 賤人들이 軍役을 피하기 위하여 書院에 投屬한 存在들이었다.³⁵⁾ 따라서 定額을 규정했다 하더라도 「朝鮮民政資料」用中錄에

各廳募入保人及鄉校書院保人必有之 此亦閑丁數 而其查出極難

이라 하였듯이 서원의 庇護下에 있는 이들을 軍役に 充當하기는 어려웠다. 院保는 하나의 避役手段으로 軍役의 過重, 폐단의 야기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肅宗 25年 7月 領議政 柳運尙의 啓에

道峰書院 則朝家尊崇 與他自別而 聞其募入 只以三十名定額 而外方則民戶與近畿不同 故良民爲避軍役 投入者甚多 一入之後 各邑莫敢誰何 此亦良丁日縮之一端也 自今已賜額書院 則募入以二十名爲定額 二十名之外 則書爲搜出 充定相當役 未賜額

35) 같은 내용의 記錄이 實錄에는 保奴로, 增補文獻備考에는 院奴로 되어있어 어느 것이 正確한 것인지는 分明하지 않다. 그러나 노비는 2章에서 賤及한 바와 같이 定額을 규정할 성질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實錄記事가 精確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書院 則不可定給募入之民 勿論多寡 使之書數 罷定軍額(備邊司謄錄 50冊, 肅宗 25年 閏 7月 17日條)

이라 하여 良民이 軍役을 피하기 위해 書院에 投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賜額書院은 保(募入)를 20名으로 定額을 삼고 未賜額書院은 認定하지 말자고 하였다. 이에 「續大典」에

募入人 鄉校四十名 賜額書院二十名 定額(續大典 卷3 禮典 禁令條)

이라 하여 사액서원에 募入人(院保) 20名을 定額으로 하는 것으로 法制化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法制化가 어느 정도 지켜졌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院保의 負擔이 軍役부담보다 훨씬 가벼웠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江原道 伊天府의 경우 書院募軍(院保)의 부담이 1兩 5錢으로 되어있다.³⁶⁾ 軍保의 경우 2兩, 附加錢 3~8錢이 되는 것에 비하면 가벼운 부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安鼎福의 「雜同散異」 書院約令에

院屬保人三十名 從願充定 呈重出完文 秋後各收米三斗 太一斗 有司掌之 米則以補供土之資 太則薰鼓沈醬以爲院用

이라 하여 院保의 負擔이 米 3斗, 太 1斗라고 한 것에서 軍役의 負擔보다는 가벼운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院保의 부담이 가벼웠다는 사실은 良民에게 있어서 書院은 좋은 軍役의 피역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正祖 12年 正月 掌令 吳翊煥이 軍役의 不均을 上疏하면서,

憑籍校院 公共圖免 俗稱奉足(正祖實錄 卷25, 12年 5月 丙戌條)

이라 하여 校院을 憑藉하여 奉足이라는 이름(즉 院保)으로 投托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書院의 良丁募入弊端을 자주 論議하면서 「查出極難」³⁷⁾, 「莫之能

36) 田川孝三, 「李朝における地方自治組織並びに農村社會語彙研究」, (1979) p. 81.

37) 朝鮮民政資料 用中錄 p. 110.

禁」³⁸⁾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같은 良丁의 募入인 額外院生과 院保의 현실적 차이는 무엇일까
純祖 25年 11月 左議政 李相瓚의 啓言에

至於軍政之弊 又不可勝言 凡民之稍實與少黠者 舉皆圖避 於官則有軍官之投屬焉
於校則有校生之投屬焉 於驛則有驛吏之投屬焉 其次各廳之保直也 書院之隸人也 各
色不一 數目甚多(純祖實錄 卷27, 25年 11月 壬寅條)

이라 하여 稍實者가 軍役을 피하기 위해 軍官, 校生, 驛吏로 投屬하고 그
다음으로는 各廳의 保直, 書院의 隸人(院保)으로 投屬한다고 지적하고 있
다. 곧 경제력의 差異에 따라 避役의 方法에 差異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따라서 額外院生보다 경제적 地位가 열세인 院保는 軍役보다 부
담이 가벼운 利點을 좇아 書院에 投屬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⁹⁾

결과 額外院生이나 院保는 軍役을 피하고 보다 가벼운 負擔을 지는 特
權을 지니고 있었다. 書院의 庇護下에서 또 書院의 현실적인 권위를 배경
으로 한 額外院生과 院保는 軍政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더욱 擴大
되었던 것이다. 이들이 朝鮮後期 書院에 있어서 書院田과 奴婢를 대신하
는 중요한 경제기반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4. 書 院 村

朝鮮後期 書院에 있어서 額外院生과 院保와는 다른 또 하나의 經濟基盤
으로 書院村이라는 것이 있다. 景宗 4年 3月 李眞儒의 上疏에

且各處書院皆占得境內一大村 有折受者然 以爲需用之地 本官不得下手於書院所占
之地中 烟戶雜役 及閔丁搜括 皆不敢侵及 有同他邑之民 其弊不可勝言 自今以後…

38) 增補文獻備考 卷 210 學校考 9 兩院總論 孝宗 9年條.

39) 院保로의 投屬이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節次를 통해 가능했던 것인지, 또한
院保가 되는 사람들의 신분이라든가 서원과의 구체적 관계등에 대해서는 현
재로서는 알 수 없다.

境內所占之村 亦皆分付各邑 還屬本官 使書院不敢更爲干預 爲後弊端庶幾少除矣(承政院日記 564冊, 景宗 十年 3月 27日條)

이라 하여 書院이 境內의 大村을 占有하여 需用之地로 삼음으로 해서 官에서 書院이 占有한 村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烟戶雜役의 부과와 閑丁搜括을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書院이 占有하는 村落이 書院村이었다. 그리고 官에 烟戶雜役을 부담하는 대신 書院의 需用土地가 된다는 것은 곧 書院村이 書院의 경제기반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書院村은 募入洞 또는 除役村이라고도 한다. 「朝鮮民政資料」用中錄에

鄉校·書院·鄉廳·將官廳·下吏官奴廳·使令廳 各有募入洞 募入所云者 除烟戶雜役 劃定一洞 每年捧牟租用之 而官捧持者價太縮矣

라 하여 書院뿐 아니라, 鄉校·鄉廳·吏廳·武廳도 各已 募入洞을 가지고 있으며 一洞을 劃定하여 烟戶雜役을 除하여 주는 대신 每年 牟租를 징수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除役村에 대해서는 牧民心書에 보다 자세한 記錄이 있으니 즉,

除役村者 邑內其一也 契房村其二也(吏屬之所私) 店村其三也(鑪店鐵店瓷器店瓦器店) 學宮村其四也 書院村其五也 驛村其六也 院村其七也(即野站) 寺村其八也(洞口村) 倉村其九也(外倉之所在) 宮田村其十也(宮結之所在) 屯田村其十一也(京司京營之所庇) 浦村其十二也(浦保錢入于監營故) 島村其十三也(屬于鎮堡) 嶺村其十四也(肩輿故) 又如兵營水營所在其營下四里 皆除役之村也(牧民心書 卷4 戶典 稅法上)

라 하여 邑內, 契房村, 店村, 學營村, 書院村 등등 各種 除役村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除役村인 書院村은 어떻게 設定되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吏廳의 除役村인 契房村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契房村이란 「牧民心書」卷 6 戶典 平賦 上에 의하면

鄉廳 吏廳 軍官廳 將官廳 官奴廳 自隸廳 通引 各有契房 而唯吏廳獨多 執大村十餘處 咸與爲契 其餘 或二或三 無定額也

라 하여 鄉廳, 吏廳, 武廳 등 地方官衙의 여러 廳이 가지고 있는 村落을 말한다 고 한다. 그리고 吏廳이 가장 많이 占有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개 契房村이란 吏廳의 除役村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있다.

契房村으로 설정되면 여러가지 特權이 부여되었다. 즉

凡爲契房之村者 即還穀免受 軍竅免侵 而民庫所出一應徭役 皆所不攤 既輸錢數百兩 即終歲安居 此民之所以樂與之爲契也(牧民心書 卷6 戶典 平賦 上)

라 하여 還穀, 軍役, 民庫의 應役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契房村에 들기 위해서는 納錢이 必要하였다.

面內 間多契房村 契房云者 即村民收出如干錢財 納于作廳 以爲免徭之地 故契房人戶 因此稠密(朝鮮民政資料 居官大要)

즉, 村民이 結契, 出錢하고 吏廳에 納付하여 免役받는다는 것은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⁴⁰⁾ 그러므로 契房村으로 설정되는 것은 村의 經濟力에 左右되었다고 하겠다. 곧 正祖 19年 12月 湖西暗行御史鄭晩得의 보고에

各邑軍丁之逃故未頤 而族微隣微 誠一癘瘼 故各邑富村 結爲契房 而謀免軍役者 亦一大弊也(承政院日記 1757冊, 正祖 19年 12月 22日條)

이라 하여 各邑의 富村이 軍役을 免하기 위해 契房을 結成한다는 지적이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書院村도 占有한 村의 數라던가 占有한 戶의 差異는 있으나 吏廳의 契

40) 契房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牧民心書」에

契房有二 一曰里契 二曰戶契 里契者 全一里而契之 歲收錢數百兩也 戶契者 執一戶而契之 歲收錢百兩也(牧民心書 卷6 戶典 平賦上)

이라 하여 村民 全體가 結契하는 里契와 몇개의 戶가 結契하는 戶契가 있다고 하였다. 朝鮮後期の 契房村은 지방계정과 관계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論究는 別途로 행할 예정이다.

房村과 같은 것이었다. 契房村이 吏廳의 財政策으로 재정보충을 目的으로 설정한 것이었다면, 書院村도 같은 除役村으로 書院의 運營維持에 필요한 財政을 마련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書院村은 언제부터 설정되었을까. 契房村의 경우 「牧民心書」에

契房之設 三十年也(牧民心書 卷6 戶典 平賦 上)

라 하여 30年 정도 되었다고 하였으니 대략 18世紀 後半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지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朝鮮民政資料」先覽에 引用된 梧里 李元翼의 말에

此則使吏房贖納各廳除役里 云云

이라 하여 除役里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仁祖때에 除役村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書院村의 경우 과연 어느 때부터 書院에 村落占有의 특권이 부여되었는지 分明하지 않다.⁴¹⁾

書院村의 占有는 어떠한 方法과 節次가 必要하였을까. 除役에는 國除와 邑除의 두종류가 있다. 즉 「牧民心書」에

除役有二種 一曰國除 二曰邑除 國除者 如宮結·屯結·學田·驛田之類是也 斯則大概狀 明著其數 不難知也 邑除者 如契房村店村之類是也(牧民心書 卷4 戶典 稅法 上)

이라 하여 國除에는 免稅의 特權을 받는 宮房田, 屯田, 學田, 驛田 등이 있고 邑除에는 契房村, 店村 등이 있다고 하였다. 書院村이 國除인지 邑除인지는 分明하지 않다. 다만 國除가 土地를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 또 書院村도 契房村과 같이 地方의 雜役등을 면제받는 除役村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邑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어쨌든 書院村은 官에서 인정받는 節次가 필요했다. 즉 書院村의 占有

41) 註 44) 參照.

는 完文의 발급을 받아야 인정되었던 것이다. 完文이란 官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어떠한 事實의 확인, 또는 權利, 特權의 인정을 確認하는 文書였다.⁴²⁾ 이는 官에서 일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請願에 의해 守令이 발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書院村도 該當書院에서 村을 占有하여 官의 (守令의) 인정을 받는 형식을 밟았던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方法과 節次에 대하여 다소 分明하게 알 수 있는 例로 純祖 19年에 建된 康津의 秀巖書院의 경우를 들 수 있다.

秀巖書院은 光山 李氏의 五人, 즉 李先齊, 李調元, 李仲虎, 李潑, 李洁을 奉祀하는 書院으로 後孫이 主動이 되어 세운 것이었다. 純祖 19年에 書院을 設立한 後, 禮曹에 다음과 같이 書院村의 劃給을 요청하였다.

呈禮曹文 庚辰(純祖 20年, 1820年)

伏以本祠即光山李氏一門五先生 履享之地…本祠履享之舉 尙云晚矣 其於俎豆之禮 香燭之儀 既有春曹之行關 拔例優施 有光於瞻聆 實爲崇幸之地 至於院底居民 不能除役 此爲缺典 所謂除役 非謂戶役結役之役也 欲除其些少冗雜無名目科外役也…且 各道各邑各院各祠各有院底鑄役之例 而至於本祠 設享未久 儀節初朔 春秋灑掃之際 朔望審閱之時 若無一箇居民之顧念 則是與閭巷私廟無異焉 豈勝慨恨 茲肅齊聲 仰籲於秉禮之大人 伏願特垂拔例之施 更軫曲護之道 卽爲行關 使院底東嶺里居民 除其烟戶雜役 以爲衛護先賢祠宇之地 千萬幸甚(秀巖誌 卷1 呈禮曹文)

대강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禮曹의 關文에 힘입어 書院의 設立을 보았으나 院底에 사는 良民들이 烟戶雜役의 除役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 또한 各道各邑의 모든 書院, 祠宇가 除役의 특혜를 받고 있는데 秀巖書院은 그렇지 못하여 서원의 운영, 유지가 어렵다는 것. 따라서 禮曹에서 關文을 내려 書院이 所在하는 東嶺里 居民에게 雜役의 免除를 주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러한 除役要請에 대하여 禮曹에서는

題音 一門五賢 相繼趾美 一體俎豆 鄉讖可見 信陵一佳公子 猶置守塚之家 況鄉賢祠側 豈無守護之人乎 量宜頒役 無失祭社之厚 意宜當尙書(上同)

42)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 207.

이라 하여 守護之策으로 題役해 주도록 판결(題音)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官에서는 完文을 발급하였다. 즉

爲永久遵行事 古邑東嶺里秀巖祠院位三結 雖已設施 補用於院財 而以此之數 萬萬有不足之歎 故加付二結 合五結 屬付院位爲去乎 自今以後 外他雜役 一切勿侵 以補院財之意 成完文以給 依此永久遵行宜當者(上同 完文)

이라 하여 秀巖書院에 二結을 더하여 주고 雜役을 면제하여 書院의 財政에 補用하도록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秀巖書院은 成均館에 通文을 보내고 있다.

右文爲圖諭事 …第念營建之費 祀享之需必多 力綿之歎未知 兪君子何以措辦 望須濳長周旋 以爲善後之地 千萬幸甚(上同 大學通文)

즉, 書院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재정마련에 대하여 주선했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⁴³⁾ 결국 書院村의 점유는 書院의 要請과 成均館의 周璇에 따라 官에서 完文을 받아 認定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겠다.

그러면 書院村의 특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全南長城의 佳山書院의 경우 完文에

右完文事 森南佳山 文忠公益齋先生祠宇墻下接人段 一依朝家劃給之例 以佳山板村斗洞等民 二十戶爲定 而祠宇守護之節 及春秋祭享時齋儒支供之道擔當舉行 則官雜役及面內烟雜役 永永勿備之意 完文後錄成給事(佳山書院誌 2 完文)

라 하여 佳山板村斗洞의 居民 20戶에게 官雜役과 面의 烟戶雜役을 免除

43) 成均館은 儒林活動의 中心이 되며 地方의 書院問題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한 例로 萬東廟의 경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先是太學生 以清州華陽洞萬東廟重修之役 借丁於尙州緇徒 尙州牧使以濫借民丁 報嶺伯 移管錦伯 拘囚院儒 院儒發通文于太學 諸生搯堂 命洪忠監司李得臣推考(正祖實錄 卷20, 9年 7月 庚申條).

즉, 萬東廟를 重修할 때 尙州에 있는 승려들을 징발한 것이 문제되어 院儒가 拘禁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萬東廟에서 太學에 通文을 보냈고, 성균관 儒生들은 이를 항의코자 搯堂하니 결국 忠清監司가 推考당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러한 例에서 성균관과 書院의 관계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겠다.

하도록 되어있다. 免除된 雜役內容에 대해서는 完文後錄에서 보듯이

各邑別閑丁 面主人雇價米 釣躑錢 負石軍 社會倉役 空石等物 東堂棘圍 軍官運力 都將路程 修理價 寡人情 檢瞬官 竹監考 各項頭役

이라 하여 當時 民戶에게 過重한 부담이 되는 것들이었다. 唐津 秀巖書院의 경우도 秀巖書院願堂村東嶺里本官除役節目에

- 一. 烟戶雜役 雇馬出役錢租 勿侵事
- 一. 日傘大馬 衙修理 黃腸曳木軍 勿侵事
- 一. 別閑丁 勿侵事
- 一. 還上 不受事
- 一. 驅馬牽軍箭竹負持 雀舌 勿侵事
- 一. 都試錢 分養馬價 勿侵事
- 一. 稅穀空石 勿侵事
- 一. 稅穀負石軍 勿侵事

이라 하여 앞서 佳山書院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官의 雜役, 烟戶雜役의 면제, 還上不受 등의 특혜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書院村은 (즉 村民은) 이러한 雜役 등을 면제받는 대신 書院에 경제적인 부담을 져야했다. 앞서 본 佳山書院의 경우 祠宇守護, 祭需, 齋儒供饋 등을 擔當토록 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負擔이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雜役 등의 부담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것임에 틀림이 없겠다.

그런데 除役村인 書院村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다. 즉 書院이 所在하는 지역인 院底村과 書院이 별도로 지정한 書院屬村이 그것이다. 예컨대 全南 靈巖의 松陽祠의 경우를 보면 뚜렷하게 알 수 있다.

- 一. 院村烟戶雜役 及 還上番丁 一切勿侵事
- 一. 屬院龍山里烟戶雜役 及 還上營木等諸弊 一切勿侵犯事
- 一. 本院村及龍山里番丁已入者 不入者 並只一齊勿侵事 丁巳 四月 日(松陽祠誌 1 禮曹完文)

즉, 哲宗 8年(1857 丁巳)에 발급된 禮曹完文에서 院村(院底村)과 屬村 龍

山里에 각각 雜役과 選上, 番丁을 면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松陽洞은 靈巖 德津面 老松里 松內部落에 所在한 祠宇로 書院村에 대해서는 같은 完文에 보다 구체적으로 明示되어 있다.

爲永久遵行事…至若院村松內外長燈 屬院龍山里午島里烟戶雜役 番丁選上營木等 諸弊 每每侵犯 而本院至於難保守護之境云 聞不勝慨然 況今春曹文蹟 若是申殿 事體 自別故 更成節目 特爲發關(松陽洞誌 1 完文)

즉 院村인 松內外長燈과 屬村인 龍山里 午島里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除役村이라 해도 書院이 所在하는 院村은 區別해볼 필요가 있다.

院村이 雜役과 選上 등을 면제받는 특권은 그 以前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顯宗 8年(1667年)에 建立된 全羅道泰仁 慕忠祠의 경우에

院下居民 二十四家 李侯命鑄費烟戶之後 以守護焉(列邑院宇事蹟 全羅道 泰仁 慕忠祠 創立記事)

이라 하여 地方官의 조치로 院下居民 24戶의 烟戶雜役을 면제하고 대신 이들은 書院을 守護하는 負擔을 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書院村인 院村(院底村)은 書院의 設立初期에 이미 除役이 인정된 것으로 생각된다.⁴⁴⁾

44) 白雲洞書院斯文立讓에

人物段盛衰無常爲果在 近在田畝三十結乙 廟院守護以 永定耕良者乙 除雜役專爲守護爲遣 備給儒生供饋時柴木令是齊(紹修書院騰錄)

라 하여 書院 近處의 田畝 30結에 耕作자를 정하고 雜役을 면제하여 주는 대신 書院守護와 儒生供饋를 위한 柴木을 負擔토록 하였다. 이것이 院底村에 대한 除役措置의 慣例이 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論考할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여기서 한가지 注目되는 것은 書院과 同族村의 관계이다. 즉 後期 書院의 濫設이 政治的 社會的인 문제 때문이었다는 견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인 문제와도 關聯이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例로 앞서본 光山 李氏 同族村인 康津 東嶺里에 秀巖書院을 建立한 것이 自己 先賢을 奉祀하고, 鄉村內 自己地位의 高揚이라는 것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 書院 院底의 除役이라는 경제적인 利點에서 書院을 建立한 것이라고도 생각된다. 결국 書院이 경제적인 利益, 국가수위에 대한 自己保護의 方便이 되었기 때문에 濫設되었다는 것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같은 書院村인 屬村은 어떠한 경우로, 서원과의 어떠한 관계에서 除役村으로 인정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書院에서 契防村의 경우와 비슷하게 임의로 富村을 지적하여 書院에 소속시키고 官의 認定을 받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즉 富村의 立場에서는 村民끼리 契房村의 경우처럼 戶契든 里契든 出錢하여 書院에 納錢하고 과중한 부담이 되는 諸雜役 등을 면제받기 위한 것이었다.

대신 書院은 이미 初期부터 인정받던 院底村의 除役特權을 擴大시켜 다른 村落을 屬村으로 占有하고 書院의 경제기반으로 삼게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아무튼 書院村은, 조선후기에 書院田과 奴婢가 전과는 달리 經濟기반으로서의 의미가 축소됨에 따라 書院의 현실적 권위에 힘입어⁴⁵⁾ 설정된 除役村이었다. 그리하여 朝鮮後期 書院의 주요한 經濟기반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5. 結 論

以上과 같이 朝鮮後期 書院의 經濟基盤이 되는 書院田과 奴婢, 額外校生과 院保, 그리고 書院村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대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朝鮮後期の 書院이 濫設되고, 또 갖가지 社會的인 폐단을 야기시킴에 따라 점차 規制의 대상이 되었다. 이 때문에 初期書院들이 받았던 國家나 地方官의 보호, 지원을 바라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書院田과 奴婢는 書院을 建立한 士林들의 自備가 原則으로 되고, 따라서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또한 노비에 있어서는 朝鮮後期 신분제변동에 따라 減少의 傾向이 나타나고, 또 그 關係에 있어서는 外居化에 따른 신분적 壓迫도가 낮아지고 대신 經濟적인 負擔爲 主로 변모해갔다. 결국 初期와는

45) 掌令吳翼煥上疏曰…甚至書院勢尊 齊任武斷 院下居民 雖累百戶 守宰莫能竊額 (正祖實錄 卷25, 12年 正月 丙戌條).

달리 書院田과 노비가 경제기반으로 意味가 축소됨에 따라 書院의 권위와 社會的 位置를 배경으로 다른 경제기반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그것이 額外除生, 院保, 그리고 書院村이었다.

額外院生은 鄉校의 西齋生을 본받아 나타난 것으로, 이들을 募入하고 대신 禮錢이라는 名目으로 錢·米·田畝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에서는 額外院生을 認定하여 定額을 규정할 정도로 날로 增加하고 있었다. 額外院生의 入屬은 募入과 投托의 두가지 方法이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들이 納錢하여 軍役의 謀免과 身分上昇을 도모할 목적이었다. 書院은 이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대신 錢·米 등을 받아 書院 運營, 維持에 필요한 경제기반으로 삼고 이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院保는 과연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分明하지 않으나 軍役의 피역수단으로 날로 增加하고 있었다. 그들은 軍役보다 부담이 가벼운 書院에 院保라는 이름은 投托하여 利益을 얻고, 書院은 이들에게 피역처를 마련해 주는 대신 錢·米를 받아 財政에 充當하였던 것이다. 國家에서는 賜額書院에 한해 20名의 院保를 정하고 있었으나 軍役의 폐단과 모순이 시정되지 않는 한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있었던 것이었다.

書院의 경제기반으로 書院村이라는 것도 있었다. 이는 朝鮮後期 郡縣內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었던 除役村의 하나였다. 書院村에는 書院이 所在하는 院(底)村과 별도로 설정된 書院屬村이 있었다. 여기에 屬하는 村民들은 當時 그들을 괴롭히던 갖가지 雜役을 면제받고 選上에서 제외되는 등 많은 특혜를 받고 있었고, 이에 대한 代價로 書院에 納錢해야 했다. 결국 書院村 또한 書院의 중요한 경제기관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Economic Base of the *Sowon* (Confucian Academies) in the late Yi Dynasty

Yoon, Hee-myeon

It is understood that the *sowon* possessed large lands and many slaves. This view is explained by several *sowon* established at the very beginning. The Confucian Academies were new educational institutions representing decayed government schools. Accordingly they received the support and protec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provincial officials. But, as the *sowon* were established rampantly in every district throughout the country, the *sowon* caused many social evils. Thus the government put restrictions at the establishment of *sowon*. That is, if one would establish a Confucian Academy he must obtain permission in advance. In addition, in the 17th reign of King Yongjo, many Academies were abolished. After all the Academies established by means of efforts from the local gentry. It became the principle that land were prepared by Academy's own means. This makes me think the scale of the land was not so large. Of course there would be not a few Academies possessing many lands. However we can notice the scale of land when we consider the basis of tax exemptions was three *kyul* (結) in *Sokdaejon* (續大典). So we assume that if there were about 1,000 Academies, below 3,000 or so *kyul* would be possibly the amount of land.

The slaves of the *sowon* were treated the same. But the scale was not so large as the *sowon* itself could not afford to maintain many. There were several indications that people came into the *sowon* in order to escape labor duties (役). Taken together, we may assume the number of slaves in the *sowon* was considerable. But according to the change in

social status, there occurred big changes in the slave's status. The slave's status was, as a rule, improved by loosening the restrictions and with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outresident slaves. Escapees increased and the number of slaves remarkably decreased. So it was a rare case to be degraded to a slave. Eventually we cannot believe that the slaves entered *sowon* to escape labor duties and become property of the *sowon*. Rather we think the slaves took on economic burdens at the cost of evading labor duties.

The scale of lands and slaves was not so large. *Sowon* became grouped according to other economic base. One of them was irregular students (額外院生). For them there was an advantage of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duty. People who could afford the expense donated money or rice to the *sowon* to be students. The *sowon* enlisted irregular students who were an easy financial source and provided finances needed for the Academy's operation.

Another economic base was the *wonbo* (院保). It is not certain when and why it had happened. But the *wonbo* was being increased as a mean of escaping military service. Thus so many people came into *sowon*, hoping to become *wonbo*. *Sowon* gained financially by them.

Another economic base of the *sowonchon* (書院村), the village belong to the *sowon* or the so-called free-burden village, which is set aside for each Gun and Hyun in the later Yi dynasty. It was privileged with an exemption from various duties which were a heavy burden. The residents had to pay money to the *sowon* to enjoy this privilege. The economic benefits which the *sowonchon* gave to Academies was one economic base.